광주·전남 거리두기, 휴가철·연휴 여파에 달렸다

지역감염 확산세 지속에 이번주 3단계 재연장 여부 결정
22일 거리두기 기간 종료 앞두고 정부도 단계 조정 고심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만간 여름 막바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감염 여파 등을 분석해 오는 22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재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도 최근 감염 양상을 지켜본 뒤 이번 주 내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논의해 거리두기 단계 등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의 여파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중증도,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양한 방역지표와 예방접종 진행 일정도 함께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선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높은 4단계가 6주째 시행 중이고, 광주와 전남 등 비수도권에선 3단계가 4주째 적용되고 있다. 또 감염세가 심각한 일부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선 자체적으로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적용된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22일 완료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다시 결정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마찬가지다.

강도태 2차관은 "4차 유행 초기에는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가 900명 이상으로 국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커졌지만 현재는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환자 수만 따로 보고 거리두기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휴가·연휴 복귀 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현재 방역 상황에서는 조속한 백신 접종 완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 관계자도 "최근 광복절 연휴와 막바지 여름 휴가 인파 등이 겹치면서, 신규 확진자 감염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방침 등을 종합해 조만간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

"어린이들 응원편지에 힘이 절로 납니다" 17일 광주시 북구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이 북구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쓴 응원편지와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미화원 채용 청탁 대가 돈 받은 전 보성군의회 의장 2심도 집유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의회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성군의회 의장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7월 환경미화원 채용을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전 의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었다.

1심은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실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직 채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A 전 의장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해 7월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10개월이 지난 지난 5월에야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는 점에서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외할머니가 친모 맞다"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8년 선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 A(48)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한 혐의와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인 B(22)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핵심 쟁점인 A씨가 숨진 여야의 친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B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 30일부터 퇴원하는 4월 8일 이전에 여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퇴원하면서 데려간 여아 배꼽에 배꼽폐색기가 달려있었고 떨어진 탯줄을 렌즈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는데 감정 결과 숨진 여아 유전자가 감정돼 B씨가 데려간 여아와 피고인이 낳은 여아가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와 함께 입원한 산모들은 누구나 횟수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고 야간에도 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출입가능했다고 진술했다"며 "간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병원 구조상 신생아실 등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B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학교서, 학원서…미투 잇따라

교직원이 알바 대학생 성추행·피아니스트가 제자 추행…경찰 수사

학교 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제자에게 못된 짓을 한 교직원, 강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광주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A대 직원 B씨가 대학 업무를 위해 채용한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다. 피해 학생과 대학측이 신고를 하면서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B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허락 없이 사진 촬영을 하고 몸을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피해 학생측 주장이다.

학교측의 불성실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학교측은 피해 학생의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행사에 참석시키는 등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측은 "넓은 공간에서 교수·학생·타 교직원들 까지 모두 같이 있었다"면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보고를 하는 시간이 걸려 즉각적으로 가·피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학교측은 사건 발생 이후 B씨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자를 성추행한 피아니스트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은 광주·전남 대학교와 고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및 해당 피아니스트 C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C씨를 성폭력 등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은 C씨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개인 레슨을 진행하면서 마사지를 빙자해 10여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C씨의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 5곳 혁신지원사업 대상 제외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전국의 4년제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가 낙제점을 받아 3년간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국고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가능대학 233개 대학을 선정해 '가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지역 4년제로는 세한대가, 전문대로서는 기독간호대·동강대·동아보건대·전남도립대 등 4개 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들 대학은 한계대학을 지정하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는 달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20일까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신청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환청 듣고 범행했어도 의도 있다면 살인미수"

'검찰청사 흉기' 40대 혐의 변경

경찰이 광주고검 청사에 난입해 검찰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광주동부경찰은 17일 A(48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환청을 듣고 살인을 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특수상해 혐의를 살인미수 혐의로 바꾸기로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높은 사람을 죽이라는 최면에 걸렸다"면서 "7층에 높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8층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환청을 듣고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목적·고의를 갖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휘둘렀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 8층 복도에서 길이 약 1m인 칼을 휘둘러 50대 검찰공무원에게 부상을 입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2644	1	광산구 용보로27번길46, 102동 11층 1107호 [송정동,라인1차아파트] 59.82㎡	아파트	118,000,000 118,000,000	
2021타경 64727	1	서구 운천로56번길19, 101동 1층 104호 [금호동,금호동삼능공간아파트] 84.92㎡[공유자박소연지분1/2,공유자박서연지분1/2]	아파트	170,000,000 170,000,000	
2021타경 65393	1	광산구 선운로34, 102동 15층 1502호 [선암동,선운지구다사로움아파트] 49.7426㎡	아파트	152,000,000 152,000,000	
2021타경 67054	1	북구 서하로94번길10, 101동 5층 502호 [용봉동,쌍용예가] 144.6534㎡	아파트	608,000,000 608,000,000	현황조사보고시점 관리비약633,400 원미납상태라고함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 63465	2	서구 세하동 704-3 655㎡ 제시외 다용도실 18.9㎡[제시외건물[다용도실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단층18.9㎡]포함]	대	389,290,400 389,290,400	일괄매각.맹지이나인접필지통해출입가능
		서구 세동둑길 20 단층40㎡ 부속 단층주택 53.88㎡[소재불명] 단층창고24.46㎡[소재불명] 단층축사11.9㎡[소재불명]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63465	1	서구 용두동 221-2 5566㎡	임야	688,500,000 688,500,000	일괄매각.지상위분묘16기소재.토지만매각,지상위비닐하우스1동,계사2동매각제외.수목매각포함
		동소 221-3 3035㎡[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자동차,중기]					
2021타경 62233	1	사용본거지:동구 양림로119번길 7 704호[학동,영동프라자] 등록번호:광주06라5856 기종:덤프트럭 25.5ton 연식:2010	자동차	60,000,000 60,000,000	보관:광주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010-6540-7261]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9. 1.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9. 8.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1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길호